

영등포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3.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339호로 2018년 2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원금 환수 등에 있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괄 개정대상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

나. 주요 개정사항

-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 정비
 - 정비내역

조례명	정비사항	비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u>제8조제2항</u>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조항 삭제	안 제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u>제9조제3항</u> “제2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조항 삭제	안 제3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u>제8조 중</u>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삭제	안 제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u>제11조제2항</u>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검진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조항 삭제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원금 환수 등에 있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조항 삭제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제2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조항 삭제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중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를 삭제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검진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삭제 하였음.
- 검토결과, 기타 상위법령 및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